

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(안 제3조).
-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항만 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).
-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,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관련 부처 이견

-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
- 기획예산처는 ‘재원 확보 노력 의무’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

입법례¹⁾와 비교할 때 안 제3조는 국가 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, 안 제3조는 항만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국가 등의 책무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, ‘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’을 명확히 하고자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, 안 제3조 중 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
- 이에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,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안 제3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<u>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	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을 하기 위</u> <u>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	② ----- -----

- 1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
② (생략)
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<u>지원을 하여야 하고</u>,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<u>하며</u>,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을 하기 위하여</u> <u>노력하여야 하며</u>, ----- <u>하고</u>, ----- ----- ---

2.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유 의무 관련 부처 이견

- 안 제6조제3항은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관련 통계 산출 등 후속 대응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.
-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5조²⁾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, 현행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12조 단서³⁾에 따라 관리청도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을

- 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5조(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1.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
 2.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·건축물의 붕괴, 화재·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,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3)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12조(사업정지 등)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들어, 개정안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
통보하더라도,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안 제6조제
3항의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.

- 이에 해양수산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, 항만안전사고에 대한
신속한 조치 및 관련 통계 관리 등 후속 대응 강화라는 안 제6조
제3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고용
노동부장관이 협력하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 「산업안전
보건법」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
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안 제6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6조(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) ③ <u>고용노동부장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로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</u>	제6조(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) ③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</u>
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주체를
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
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
 2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 3.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